

---

# 「지역 주도형 시 대전환」 사업공고 안내서

---

2025. 7.
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
제조혁신지원처

# 목 차

I. 지원대상 및 규모 .....	1
II. 사업 내용 [예시] .....	3
III. 사업계획 착안사항 .....	5
IV. 접수방법 및 기타 유의사항 .....	7
V. 평가 방법 및 기준 .....	9
VII. 향후 일정 .....	11

참고1. 지역 시 성장 서포터 운영

참고2. 사업비 산정 기준

## 【주요 추진방향】

- **(사업구성)** AI 도입 및 활용, 인프라 구축, 현장 인력양성, 광역 지방자치단체 특성을 반영한 AI 개발·실증 등으로 구성
  -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성이 높은 사업은 우대, 타부처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자체 추진 사업과 중복일 경우 불허\*
  - \* 단, 기존사업 종료 후 고도화사업 등 후속지원의 경우 지원 가능
- **(추진체계)**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컨소시엄\*을 구성하여 사업을 신청하고, 선정 후 관할 지방청 및 중진공 지역본부와 지역 AI 사업단 설치·운영
  - \* 광역지방자치단체, 지역혁신기관(TP, 경제진흥원 등), 대학·출연연 AI 전문기업(스타트업) 등
  - 지역별 컨소시엄을 통해 AI 솔루션 도입·확산 등 과제를 수행하고, 신속한 AI 전환 및 후속 연계지원을 위해 지역 AI 사업단 활용
- **(예산활용)** 국비 전액이 자치단체자본보조(330-03)임을 고려, 동 예산은 컴퓨팅 파워 및 AI 실증 등 인프라 용도로 활용 가능
  - 매칭 지방비(40%)는 AI 솔루션 도입·활용을 위한 사업 중심으로 매칭
  - \* (매칭비율) 국비(평균 70억원) : 지방비 등(약 46억원) = 6 : 4
  - \*\* 매칭 지방비(광역지방자치단체, 주관기관, 중소기업 등) 40% 중 광역지방자치단체는 20% 이상 부담
- **(성과점검)** '지역 중소기업의 AI 활용·확산' 목적에 맞게, 사업 내용과 계획을 반영하여 KPI 설정 및 성과점검
  - '중소기업 매출액 증가율'을 기본 KPI로 설정, 기획한 AI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자율적으로 설정(총 3개 이상)
  - \* 지표 적절성, 도전성, 이행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, 필요시 선정과정 중 수정·보완
  - \*\* 1년차 사업 종료 후 KPI 달성·예산 집행 등 점검 → 2년차 예산 차등 지급 가능

### ※ KPI 설정 예시

- 데이터 및 공동 장비 등 인프라 사업 → 인프라 활용률 등
- 솔루션 보급의 활용·확산 사업 →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매출액 증가율

## □ 지원대상

- (신청자격)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\*(컨소시엄)
  - \* (광역시, 6개) 부산, 대구, 인천, 광주, 대전, 울산, (특별자치시·도, 4개) 제주, 세종, 강원, 전북, (도, 6개) : 경기, 충북, 충남, 전남, 경북, 경남
- (필수요건)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 AI 지원 및 AI 인프라 구축 관련 전문성 등을 보유한 기관으로 컨소시엄\*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
  - \* 광역지방자치단체, 지역혁신기관(TP, 경제진흥원 등), 대학·출연연, AI 전문기업(스타트업) 등
  - \*\*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기관·기업 수의 제한 없음
- (주관기관) 정부 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고, AI 지원 관련 사업 운영 경험을 보유한 공공기관, 비영리기관(협·단체) 등
- (참여기관) 특정 분야\*의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주관기관으로부터 과업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기관
  - \* 특정 분야 : AI, 데이터, 공정, 장비, 인력양성 등
- (지원제외) 접수 마감일 기준, 중복 사업, 휴·폐업, 국세·지방세 체납 등 아래 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참여 제한
  - \* 컨소시엄 참여 기관·기업 모두 해당하며 신청기관별 자체 확인 후 신청 필요

## ※ 지원제외 요건

- 신청 사업의 목표 및 내용이 타부처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AI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(기존사업 종료 후 고도화사업 등 후속지원의 경우 지원 가능)
- 최근 결산 기준 완전자본잠식 기업(접수 마감일 기준 창업 7년 미만 기업 미해당)
- 휴·폐업중인 기업, 국세·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

※ 지원제외 요건이 확인된 경우,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협약해약 처리

※ 전담기관은 지원제외 요건 관련 증빙서류 요구 가능, 미제출 시 지원 제외 처리

※ 컨소시엄 내 1개 기관이라도 지원 제외 사항 발생 시, 지원 제외 처리

□ 지원규모

- (선정규모)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(권소사업)
- (협약기간) 협약일('25년 10월 예정) ~ 2026년 12월
  - \*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총사업기간인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며, 최종 선정 후 협약체결시 변동사항 등 재안내 예정
- (지원조건) 광역지방자치단체별 2년간 국비 평균 140억원(연 70억원 수준)

※ 국회 예산심의 및 연차별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기간, 예산(증액, 감액 포함), 업무 범위 등을 조정하여 재협약 및 계속 지원여부 결정

- 총사업비 기준, 지방비·민간부담금을 40%이상 매칭하며, 지방비 비중을 최소 20%이상으로 구성
- 지방비·민간 부담금은 현금 및 현물로 부담하며, 현물은 최대 20%까지 인정

< 연간 사업비 구성 예시 >

국 비(60%)	지방비+민간부담금 (40%)	합 계 (100%)
70억원	46.7억원	116.7억원
현금 70억원	현금 37.3억원(80%)	현금 107.3억원
현물 -	현물 9.4억원(20%)	현물 9.4억원

\* 연도별 광역지방자치단체부담금 및 민간부담금 총액의 20% 이내 한도로 인건비 및 데이터 센터용 건물 임차료 등 현물 인정

- 중소기업에 AI 설비·솔루션 등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국비 60%(현금), 지방비 20%이상(현금), 중소기업 20%(현금+현물)로 구성하고, 중소기업 부담금에 대해 현물 70%까지 인정

< 연간 사업비 구성 예시 >

국 비(60%)	지방비(20%)	민간부담금 (20%)	합 계 (100%)
70억원	23.4억원	23.3억원	116.7억원
현금 70억원	현금 37.4억원	현금 7억원(30%)	현금 107.3억원
현물 -	현물 -	현물 16.3억원(70%)	현물 9.4억원

- 지방비·민간 부담금에 대한 매칭 확약 필요(확약서 제출)

## II

# 사업 내용 (예시)

### 1 AI 솔루션 도입·활용 및 확산

- (솔루션 도입) 기업의 AI 역량, 적용 가능한 AI 기술 유형 등을 고려하여 적합 AI 솔루션을 매칭하고 설비·솔루션 도입(개선) 지원

- (기업진단) 기업의 AI 역량,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정의 및 필요한 AI 솔루션 파악, AI 솔루션 도입 계획 및 AX 로드맵 수립 등

#### < AI 도입준비를 위한 기업진단(예시) >

진단 항목	주요 내용
디지털 역량	• MES, ERP, 센서, 클라우드, 스마트공장 등 디지털 인프라 수준
데이터 확보 수준	• 수집 가능한 데이터의 종류, 양, 품질
경영애로에 따른 AI 니즈	• 품질, 납기, 원가, 마케팅 등 주요 경영 이슈, 핵심 경쟁력
AI 적용 기대효과	• 생산성 향상, 불량률 감소, 비용 절감 등 KPI 설정 및 예측

- (솔루션 도입) 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적용 가능한 AI 기술 유형을 선별하여 적합 AI 솔루션을 매칭하고 설비·솔루션 도입(개선) 지원

#### < 맞춤형 AI 솔루션 매칭(예시) >

기업 특성	추천 AI 적용 분야	솔루션
품질검사	• 비전 AI 기반 품질검사	• 결함 이미지 학습모델 + HW
재고예측	• 수요예측 + 생산계획 최적화	• 시계열 예측 AI + ERP 연동
마케팅·홍보	• 고객 데이터 기반 마케팅 자동화	• sLLM 기반 시장조사, 판매전략
고객응대	• 업무 효율 향상, 고객 대기시간 축소	• 제품정보, 반복질문 등 AI 처리
인사·채용	• 지원자 적합도 제고, 채용 성공률 향상	• 공고, 이력서 자동 분석 및 추천

- (솔루션 개발·실증)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AI 솔루션 개발 및 현장 실증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적용 후 동종업계로 확산

- 다수기업이 체감하는 공통의 공정, 설비, 경영자원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 공급으로 대규모 신속 AI 전환 추진

#### < 개발 및 실증(예시) >

항목	주요 내용
제조	• 제조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를 개발하고, 실증을 통해 효과를 입증한 후, 중소 제조기업에 보급·확산
물류	• 자동화·지능화를 위해 AI 에이전트를 도입하고 실증함으로써 생산성 향상, 비용 절감, 탄소 저감, 정시배송률 향상 등을 달성
헬스케어	• 의료현장 혁신, 비대면 진료 지원, 질병 예측 및 관리 자동화, 고령자 건강 관리 등에 AI 에이전트를 실증하고 실제 환경에 적용

## 2 지역 AI 활용 인프라 구축

- (컴퓨팅 인프라) GPU, NPU 등 고성능 연산자원이 부족한 기업의 모델 개발 및 데이터 분석 지원
  - (공공 GPU/AI 팜) AI 전용 GPU 서버(H100, A100 등)를 구축 후 중소기업이 시간 또는 프로젝트 단위로 사용하도록 제공
  - (클라우드 AI) 인터넷 기반의 AI 개발 플랫폼(AWS SageMaker, Naver CLOVA Studio 등)으로, 모델·솔루션 개발시 사용 지원
- (AI 테스트베드 및 실증) 지역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AI 기술을 실증하고 실제 현장에 적용해볼 수 있는 기회 제공

항 목	주요 내용
산업별 AI 실증센터	• 특정 산업(예: 자동차, 의료, 물류)에 특화된 AI 솔루션을 실험해볼 수 있는 공간 및 장비 제공
제조 공장 테스트베드	• 실제 제조 공정을 모사한 공정에서 AI 예지보전, 이상탐지, 최적화 솔루션을 실험할 수 있는 공장형 공간

## 3 AI 현장인력 양성 및 교육 인프라 조성

- (AI 현장인력 양성) 지역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AI 현장활용 인재 육성
  - (전문교육과정 운영) AI·데이터 사이언스 특화 교육 운영. 파이썬, 딥러닝, 자연어처리 등 실무 중심 커리큘럼 운영
  - (직무전환 재교육) 기존 제조, 물류, 서비스업 등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산업별 AI 활용법(품질예측, 수요예측 등) 중심 재교육
  - (청년 대상 AI 기초·심화 교육) 취업준비생,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기본 알고리즘부터 산업 데이터 기반 실습까지 지원(실전형 코딩테스트 등)
- (AI 실습 및 교육 인프라 구축) 지역에 AI 실습 및 교육 거점 마련으로 기업유치, 창업촉진, 고용확대 등 유도

항목	주요 내용
AI 실습센터 및 오픈랩 구축	• 고성능 GPU 서버, 클라우드 AI 플랫폼, 데이터셋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실습 공간 조성 및 개방
메이커스페이스 및 AI 융합 공간	• 3D프린터, IoT 센서 등 메이커 장비와 AI 응용 기술의 융합 공간
XR 및 디지털 트윈 기반 실습 센터	• 제조, 건설, 물류 등 산업 현장을 디지털 트윈·XR로 구현하여 AI 기반 시뮬레이션 환경 제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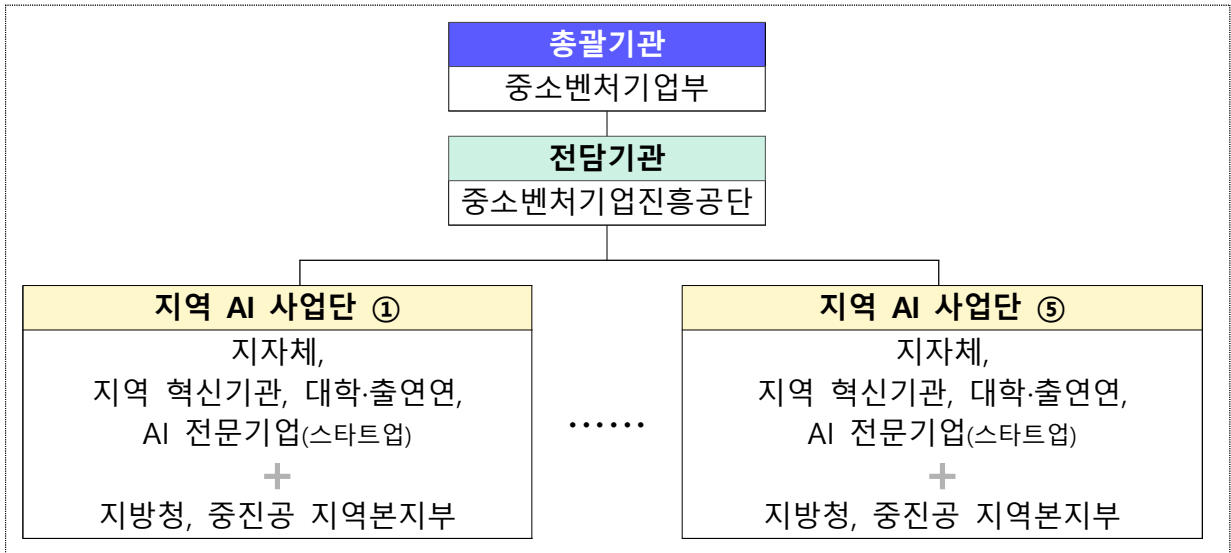
### III

## 사업계획 착안사항

- (사업내용) 맞춤형 AI 도입·활용, 인프라 구축, 현장AI인력양성, 광역지방자치단체 특성을 반영한 AI 개발·실증 등의 사업 자율 기획
    - 광역지방자치단체 주력산업과 연계성이 높은 사업을 우대하며, 타부처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자체 추진 사업과 중복일 경우 불허
    - \* 기존사업 종료 후 고도화사업 등 후속지원의 경우 지원 가능
    - '지역 중소기업의 AI 활용·확산' 목적에 맞게, 중소기업 대상 AI 솔루션을 보급·확산 지원하는 사업을 필수 구성
  - (KPI설정) '지역 중소기업의 AI 활용·확산' 목적에 맞게,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업내용과 계획을 반영하여 KPI 설정 및 성과점검
    - '중소기업 매출액 증가율'을 기본 KPI로 설정, 기획한 AI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자율적으로 설정(총 3개 이상)
    - \* 지표 적절성, 도전성, 이행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, 필요시 선정과정 중 수정·보완
    - \*\* 1년차 사업 종료 후 KPI 달성·예산 집행 등 점검 → 2년차 예산 차등 지급 가능
- ※ KPI 설정 예시

  - 데이터 및 공동 장비 등 인프라 사업 → 인프라 활용률
  - 솔루션 보급의 활용·확산 사업 →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매출액 증가율
- (추진 의지)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방비 확보 방안, 시설·건물 등 인프라 지원 사항(공공시설, 유희공간 등)을 구체적으로 제시
  - (지속가능 운영방안) 정부 지원 종료 후에도 구축된 인프라, AI 솔루션 보급·확산 사업, 성장 서포터 등의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재원확보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 제시
    - 사업 종료 후, 사업추진(성과활용) 현황을 5년이상 제공해야 함

- (추진체계) 선정된 컨소시엄은 사업 추진을 위해 관할 지방 중소벤처기업청(이하 지방청)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(이하 중진공)가 참여하는 「지역 AI사업단」을 설치 및 운영 필수
  - 지방청 및 중진공은 지원기업 선정평가 및 심의, 기업진단, 후속 연계지원 등 사업 협업 지원 가능



구 분		담당 및 역할
총괄 기관	중소벤처기업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성과분석 등 사업총괄</li> </ul>
전담 기관	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광역지방자치단체 제안 사업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</li> <li>지역 AI 사업단 총괄 관리(점검, 평가 등)</li> </ul>
수행 기관	지역 AI 사업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역 주도 AI 사업 기획 및 수행관리</li> <li>사업 참여기관 평가·선정 등 사업관리</li> </ul>
	광역지방자치단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역 AI 생태계(인프라 및 활용확산) 설계·기획</li> <li>지역 AI 사업단 기획관리</li> <li>사업비집행 및 추진일정 등 수행관리 총괄</li> </ul>
	주관기관 참여기관 TP 등 지역혁신기관, 대학·출연연, AI 전문기업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역 중소기업 AI 전환 프로그램 운영</li> <li>인력양성 및 전문가 교육 등 사업수행</li> </ul>
수행 참여	지방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광역지방자치단체 등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네트워크 형성 필요한 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협력 체계 구축</li> </ul>
	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업진단(AI 역량 등), AI 솔루션 도입 사업 지원</li> <li>지역 중소기업 AI 전환 활성화를 위한 정책자금, 혁신바우처, 글로벌화 등 연계지원</li> </ul>

## IV

### 접수방법 및 기타 유의사항

- ※ 접수 마감일 17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며, 17시 이후 신청·제출, 수정이 일체 불가하므로 17시 이전 반드시 제출 완료 필요(접수 마감 1~2일 전 신청완료 권고)
- ※ 사업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 마감일 17시까지 가능

- (공모방식)**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획한 지역 중소기업의 AI 활용·확산 사업의 사업계획을 자유롭게 제안하는 방식
- (신청기간)** 공고일부터 ~ 8월 29일(금) 17시까지
- (신청방법)** 신청공문(전자문서),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전자문서에 첨부\*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제출
  - \* 첨부문서의 용량 초과시 관련 문서(신청서, 사업계획서 등)는 pdf 변환하여 이메일 ([ai@kosmes.or.kr](mailto:ai@kosmes.or.kr)) 발송 요망
  - 신청서 등 날인된 원본문서는 우편발송\* 요청(29일 도착분에 한함)
  - \*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430(충무공동) 중소기업 AI활용·확산전담반
- 필수 제출서류**

번호	서류명	작성·제출 방법
1	사업신청서	- 주관기관 작성
2	사업계획서	- 주관기관 총괄 작성
3	컨소시엄 협약서	- 주관기관 작성
4	수행기관 대표의 참여 의사 확인서	- 주관기관 작성
5	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	-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작성
6	자치단체 부담금 납입협약서	- 광역지방자치단체 총괄 작성
7	취득자산 구매계획서	- 수행기관별 작성(해당시)
8	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	- 수행기관별 작성
9	사업계획 발표자료(ppt)	- 주관기관 작성

## □ 유의사항

-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동 사업을 통해 생성된 산출물은 중기부·중진공 등에 공개 필요
- 사업 수행결과로 취득되는 지식재산권, 기타 제반 권리 등 유·무형적 결과물의 소유권은 지역 AI 사업단으로 귀속, 필요시 대내외 공개·배포 가능
- 주관기관은 공고 및 첨부한 파일 등을 통해 사업내용을 파악한 후 사업 목적·범위·특징, 수행전략, 요구조건 등을 명확하게 요약기술
  - 사업계획서 해석에 대한 최종 권한은 전담기관에 있으며 필요시 사업계획서의 수정, 추가 자료 요청 가능
-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, 사용권 및 특허권 등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함
-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 및 전담기관 요구에 의해 수정·보완·변경된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함
  -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기재내용은 전담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첨삭·수정·삭제·대체 불가
- 사업계획서에 대한 분량 제한(요약문 : 5page, 본문 : 300page 이내)
- 일상적인 사업 수행 보고는 수시 보고로 진행하며, 착수, 중간, 결과 보고를 통해 연차별로 사업 수행 내역을 점검
- 지역 AI 사업단은 사업 수행 중 사업내용 및 범위, 예산, 참여인력 등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, 전담기관에 수행변경을 신청하고 승인을 득해야 함
- 협약 체결 이후, 본 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 통장을 개설(연차별)해야 하며, 이자는 반납을 원칙으로 함

## □ 평가 및 선정기준

- (평가위원회) 산·학·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(7인 내외)를 구성하여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서면평가 및 대면평가 진행
- (서면평가) 사업계획서 및 기타 제출서류 기반으로 신청 요건 등 적격성 확인 후,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서류평가 진행
  - \* 지원 제외 요건 등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제외
- (대면평가)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\*가 발표평가를 통해 추진의지, 지원 효과성, 실행 및 지속가능 운영방안의 타당성 등을 평가
  - \* 부득이한 사항으로 발표자를 변경할 시에는 전담기관과 사전협의를 통해 참여 기관 담당자로 변경 가능
  - 사업계획 발표 15분, 질의응답 15분 등 총 30분 내외로 평가 진행
- (현장평가) 평가위원회(대면평가)를 통해 사업 계획의 추진 가능성, 적절성 등의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실시
- (선정방법) 서면평가 및 대면평가 점수를 합산한 최종점수가 높은 순으로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(컨소시엄)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
  - ※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평가 차순위 수행기관과 협상 진행
  - 서면·대면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·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결정(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산정)
  - 최종점수 산정 시 서면평가 점수 비중을 40%, 대면평가 점수 비중을 60%로 반영하여 합산
  - 최종점수가 동점인 경우, <sup>(1차)</sup>성과 및 기대효과, <sup>(2차)</sup>추진계획 우수성, <sup>(3차)</sup>지방자치단체 역량 평가지표별 고득점 순으로 선정
  -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원 가능
  -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,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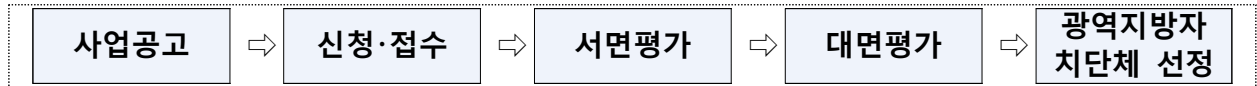
□ (평가지표)

평가분야	세부내용	배점
<b>① 사업목적 및 목표</b>	<b>▶ 사업 방향성, 목표의 명확성 및 지역 수요 부합도 등 평가</b>	<b>20점</b>
■ 사업공고 및 정책 부합성	•정부의 AI 정책 방향과의 연계성 및 기여도 •사업추진 계획 목표가 사업공고의 목적과 목표에 부합여부	10점
■ 사업목적 명확성 및 구체성	•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의 명확성 및 구체성 •AI 인프라 및 기업 활용확산을 위한 수요 타당성 및 실현방안	10점
<b>② 추진계획 우수성</b>	<b>▶ 사업 실행계획의 우수성 및 실현 가능여부 등 평가</b>	<b>30점</b>
■ 사업전략 우수성 및 참신성	•AI 인프라 및 중소기업 지원방식의 혁신성 및 효과성 등 •지역 특색에 적합한 AI 전환 계획 및 차별화된 전략	10점
■ 사업 실행방안 구체성	•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일정(예산집행), 역할분담 등 구체성 •지원 프로그램 대상 선정기준, 내용, 성과관리 등 계획의 명확성 •사업 세부계획의 목표 연계성 및 일관성 등	10점
■ 추진계획 충실성 및 타당성	•사업 계획서 내용에 빠짐없이 충실하게 작성되었는가 •추진계획의 실현가능성, 자원 활용계획의 타당성, 적절성 등	10점
<b>③ 지방자치단체 역량</b>	<b>▶ 사업 추진 의지, 전문성 및 협력체계 구축 능력 등 평가</b>	<b>20점</b>
■ 사업추진 및 관리체계 역량	•지자체의 인력 투입 계획, 제도 개선, 자원 확보 등 추진의지 •사업 관리체계(조직, 모니터링, 의사결정 등)의 명확성 및 적정성	10점
■ 사업단 참여기관의 적절성	•지자체, 지역혁신기관, 전문기관 등 역할분담 및 전문성 등의 적정성 •지자체 및 참여기관 간 연계·협력 방안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	10점
<b>④ 성과 및 기대효과</b>	<b>▶ 사업추진 효과성(활성화, 성장성 등) 및 지속가능성 등 평가</b>	<b>30점</b>
■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	•성과목표의 적정성 •중소기업 AI 활용·확산 효과 •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•고용, 매출 등 지역 중소기업 성과 향상에 미치는 효과	20점
■ 지속 활용·확대 방안의 적절성	•사업 종료 후 지속 확대 방안의 적절성 및 구체성 여부 •지속가능한 AI 생태계 등 발전 가능성 여부	10점
<b>총 점</b>		<b>100점</b>

## VI

## 향후 일정

- (선발절차)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한 사전 설명회, 서면평가 및 대면평가 등을 통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선정



- (1년차 추진일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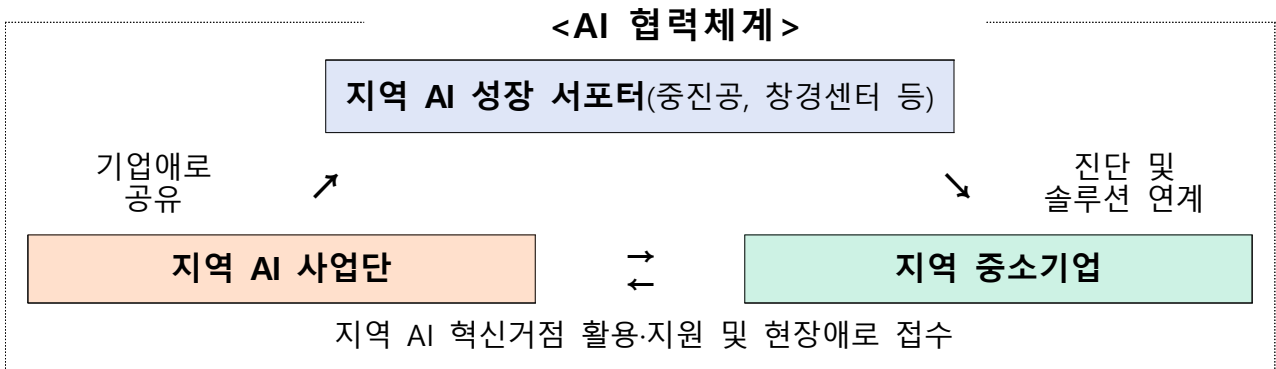
사업공고 (25.7월말)	• 지원 내용, 지원자격, 선정방식 등(8월말까지 접수)	중기부 중진공
↓		
서면평가 (9월)	• 사업계획서 및 기타 제출서류 기반 신청요건 및 적격성 검토, 평가지표 기준 서류평가 진행 등	평가 위원회
↓		
대면평가 (9월~10월)	•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대면 발표평가 진행	평가 위원회
↓		
(필요시) 현장평가	• 현실성, 추진 가능성 등 현장 점검	중진공
↓		
협약체결 (10월)	• 광역지방자치단체(지역 AI 사업단) 협약체결 및 사업비(선금) 교부	중진공 광역지방 자치단체
↓		
중간점검 (25.11월말)	• 사업비 집행 점검, 사업비(잔금) 지급 등	중진공
↓		
최종평가 (~25.5월)	• 완료 보고서 등 제출	평가 위원회
↓		
사업비 정산	• 사업비 정산내역보고서 제출	중진공
↓		
사후관리	• 사후관리(5년)	중진공

※ 상기 일정은 과제 수행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 참 고 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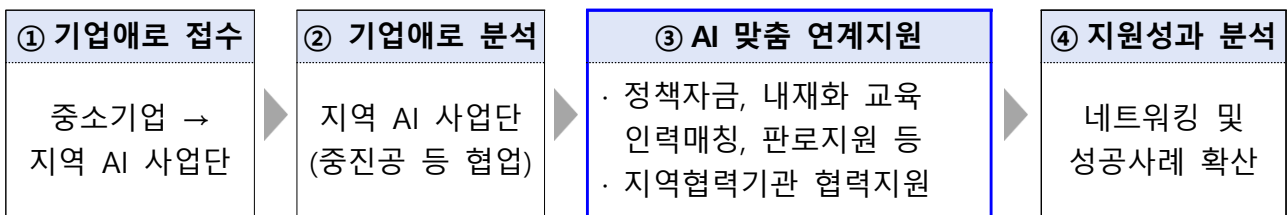
## 지역 AI 성장 서포터 운영

- **(지역 AI 협력체계)** 지역 중소기업의 신속한 AI 전환과 지속 활용을 위해 지역 AI 사업단과 참여기업, 지역 중진공·창경센터 등 협력체계 마련
  - 지역 AI 사업단과 지역 혁신기관(TP, 중진공, 창경센터 등)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AI 생태계 구축



- **(후속 연계지원)** 진단, 컨설팅, 솔루션·설비 등 지원 이후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중진공의 정책기능을 연계하여 후속 지원

### <지역 AI 현장애로 해결 프로세스(안)>



- ① **(애로 접수)** 지역 AI 사업단 간의 지속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중소기업의 AI 도입·활용에 있어 애로사항 접수 창구
- ② **(기업분석)** 중소기업 진단 및 평가 시스템을 통해 기업을 분석하고 기업 특성 및 니즈를 반영한 맞춤 솔루션(정책수단 등) 제시
- ③ **(맞춤연계)** 정책자금, 교육 등 다양한 후속연계 지원을 통해 AI 활용·확산 및 AI 역량 내재화를 통한 혁신성장 및 경쟁력 제고

□ 비목별 사업비 계상 기준

○ 사업비는 아래 비목별 산정 기준에 따라 신청

- 비목은 인건비, 직접사업비, 간접사업비로 구분하여 편성

- 사업의 부문별 특성을 반영하여 세부 비목(소분류 및 세분류)을 별도로 설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, 반드시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작성

< 비목별 산정 기준 >

비목	소분류	세분류	내역 및 산정 기준						
인건비			○ 편성 내역 : 사업 수행을 위해 참여하는 내부 인력(정규직)에 대한 인건비 - 수행기관에 소속(겸직 포함)되어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인력(해당기관 소속 4대 보험 직장 가입자)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○ 편성 예산						
		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20%;">국비</th> <th colspan="2">지방·민간 부담금</th> </tr> <tr> <th>현금</th> <th>현금</th> <th>현물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-</td> <td>○</td> <td>○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국비	지방·민간 부담금		현금	현금	현물
국비	지방·민간 부담금								
현금	현금	현물							
-	○	○							
			○ 산정 기준 : ①급여총액 × ②인건비계상률(%) ① 급여총액 - 수행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수행기관 소속의 인력이 받는 1년 동안의 급여 총액* * 봉급, 성과상여금, 초과근무수당, 연가보상비, 퇴직금, 퇴직급여 총당금, 4대 보험 등 수행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한 비용 ② 인건비계상률 - 해당 참여인력이 해당 과제에 실제 투입되는 비율로서 해당 연도의 연평균을 적용 ※ 수행기관의 장은 참여인력의 변경 및 인건비계상률 조정 등에 따른 인건비 변동내역을 관리하여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반영하여야 함						
			< 증빙서류 >						
			○ 참여인력 현황표(성명, 참여기간, 인건비계상률, 변경사항 등) ○ 급여명세서(월별) ○ 계좌이체증명 등 ※ 단, 대학, 국공립연구기관, 정부출연기관, 특정연구기관, 전문생산기술 연구소의 경우 참여인력 현황표에 급여정보를 포함하여 제출할 경우 별도의 급여명세서(월별) 및 계좌이체 증빙은 면제						

비목	소분류	세분류	내역 및 산정 기준								
직접 사업비	부지 · 건물 구축비	부자건물 구입비	○ 편성 불가								
		부자건물 임차비	○ 편성 내역 : 토지·건물 등의 인프라로 수행기관이 보유하여 사업 수행에 활용(제공)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차비 - 동 사업 추진을 위해 제공하는 전용공간에 한함 ○ 편성 예산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33%;">국비</th> <th colspan="2">지방·민간 부담금</th> </tr> <tr> <th>현금</th> <th>현금</th> <th>현물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-</td> <td>-</td> <td>○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○ 산정 기준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<math display="block">\text{임차비(월)} = \frac{\text{전체면적}}{\text{공시지가}} \times \frac{\text{제공면적(m}^2\text{)}}{\text{전체면적(m}^2\text{)}} \times \frac{1}{\text{총사업기간(월)}} \times 20\%(\text{최대})</math> </div> - 임차비는 전용면적에 해당하는 공시지가의 20% 이내에서 인정 - 공시지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기관 재무제표 등 공식적 인정 금액 적용 가능	국비	지방·민간 부담금		현금	현금	현물	-	-
	국비	지방·민간 부담금									
	현금	현금	현물								
-	-	○									
시설 · 장비 구입비	시설 · 장비 구입비	○ 편성 내역 : 사업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설·장비·테스트베드 등의 매입·설치 비용 - 해당 사업으로 구입한 시설 등은 총 수행기간 내에는 동일 사업 및 타 사업(과제)에 현물로 산정 불가 - 시설 구입 시 수행기관 내 공동 활용이 가능한 공동 활용 시설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 활용하여 중복구매를 최소화하여야 함 ○ 편성 예산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33%;">국비</th> <th colspan="2">지방·민간 부담금</th> </tr> <tr> <th>현금</th> <th>현금</th> <th>현물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○</td> <td>○</td> <td>-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○ 산정 기준 : 실소요금액	국비	지방·민간 부담금		현금	현금	현물	○	○	-
	국비	지방·민간 부담금									
현금	현금	현물									
○	○	-									
시설 및 장비 구입 · 설치 비	시설 · 장비 임차비	○ 편성 내역 : 사업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설·장비·테스트베드 등으로 수행기관이 보유하여 사업에 제공(활용)하는 시설 등에 대한 임차비 - 전용공간내 설치된 경우만 인정 ○ 편성 예산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33%;">국비</th> <th colspan="2">지방·민간 부담금</th> </tr> <tr> <th>현금</th> <th>현금</th> <th>현물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-</td> <td>-</td> <td>○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○ 산정 기준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<math display="block">\text{임차비(월)} = \text{공인감정가}^* \times \frac{1}{\text{총사업기간(월)}} \times 20\%(\text{최대})</math> </div> - 임차비는 공인감정가격의 20% 이내에서 총 사업기간 중 해당 시설의 내용년수가 남아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- 공인감정가격 적용이 어려운 경우 구입가격으로 산출 가능하며, 이 경우 사업기간 시작 전까지 구입 5년이 초과하지 않는 시설만 인정	국비	지방·민간 부담금		현금	현금	현물	-	-	○
국비	지방·민간 부담금										
현금	현금	현물									
-	-	○									

비목	소분류	세분류	내역 및 산정 기준									
		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&lt; 증빙서류 &gt;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카드매출전표(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)</li> <li>○ 거래명세서</li> <li>○ 구매의뢰서</li> <li>○ 외자구매(국외 수입)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. 단, 관세법규상 수입신고가 필요없는 물품인 경우에는 배달증빙 서류</li> <li>○ 외부제작을 의뢰한 경우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구비. 단, 거래처의 재무제표 확인원,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원 등 요청시 제출 필요</li> <li>○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및 검수(설치) 완료 확인서</li> <li>○ 임대차계약서 등</li> </ul>									
	기타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b>편성 내역</b> : 사업기획, 평가, 교류, 홍보 등 기타 사업 관련 직접비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및 관리 지침에 따라 편성</li> <li>-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소분류 및 세분류를 별도로 설정하여 편성</li> </ul> </li> <li>○ <b>편성 예산</b>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25%;">국비</th> <th colspan="2" style="width: 75%;">지방·민간 부담금</th> </tr> <tr> <th>현금</th> <th>현금</th> <th>현물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-</td> <td>○</td> <td>○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국비	지방·민간 부담금		현금	현금	현물	-	○	○
국비	지방·민간 부담금											
현금	현금	현물										
-	○	○										
	간접사업비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b>편성 내역</b> : 여비, 회의비, 위원회 수당, 공공제세 등 사업 관련 간접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총 간접사업비는 당해년도 지방·민간 부담금의 10% 이내로 편성함</li> <li>-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및 관리 지침에 따라 내역 편성</li> <li>-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자의 국내외 출장비 지급, 기타 당해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 등은 불인정</li> <li>- 위탁정산을 위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검토 비용은 주관기관이 부담</li> </ul> </li> <li>○ <b>편성 예산</b>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25%;">국비</th> <th colspan="2" style="width: 75%;">지방·민간 부담금</th> </tr> <tr> <th>현금</th> <th>현금</th> <th>현물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-</td> <td>○</td> <td>-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국비	지방·민간 부담금		현금	현금	현물	-	○	-
국비	지방·민간 부담금											
현금	현금	현물										
-	○	-										